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6,256,387	14,287,692
일반회계	465,594,764	13,967,843
특별회계	10,661,623	319,849
기타특별회계	10,661,623	319,849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047,092	31,413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303,162	39,095
건축진흥특별회계	225,600	6,768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467,795	14,034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40,720	4,222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89,815	2,694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1,410	2,142
드림빌특별회계	2,094,151	62,825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334,288	40,0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87,590	116,62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01,6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